

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4. 4. 23.(화) 10:00

#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4년 4월 12일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
-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
-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인 경우 위임근거 명확화
-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(18개)

1) 「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3. 6. 27.개정, 2023. 6. 27. 시행)되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2조제5호)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→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## 2)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」

○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23. 4. 11.개정, 2024. 1. 12.시행)되어 인용조문이 제37조의2가 제37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)

- 제37조의2 → 제37조의3

## 3) 「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」

○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폐지(2023. 6. 9.폐지, 2023. 7. 10.시행)되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3. 6. 9.제정, 2023. 7. 10.시행) 되며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폐지(2023. 7. 7.폐지, 2023. 7. 10.시행)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제정(2023. 7. 7.제정, 2023. 7. 10.시행) 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, 안 제4조)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

→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

→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

## 4) 「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

○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개정(2015. 5. 18.개정, 2015. 8. 19.시행)되어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1조제2항제3호)
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→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
## 5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○ 「학교체육진흥법」의 제명에 맞게 인용 조문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제5호)

- 「학교체육진흥법」 → 「학교체육 진흥법」

**6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**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전부개정(2019. 1. 15.개정, 2020. 1. 16.시행)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38조의4가 제122조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7조제3항)
 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 →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2조

**7)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**

-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 개정(2018. 1. 26.개정, 2016. 1. 26. 시행)되어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(안 제6조)
  -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  
→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

**8) 「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-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개정(2010. 3. 17.개정, 2010. 6. 18.시행)되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(안 제1조)
  -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→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

**9)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(2015. 12. 31.개정, 2016. 1. 1.시행)되어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(안 제2조)
  -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 
→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**10)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- 인용한 조례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제명에 맞게 정비(안 제8조)
  - 「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 
→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
### 11)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개정(2010. 11. 10.개정, 2010. 11. 10.시행)되어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(안 제3조)
  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→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### 12) 「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」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3. 6. 27.개정, 2023. 6. 27.시행)되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  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 
→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### 13) 「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

- 「행정절차법」 개정(2019. 12. 10.개정, 2020. 6. 11.시행)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규정(제39조의3)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9조제2항)
  - 제39조의2 → 제39조의3

### 14) 「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」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3. 6. 27.개정, 2023. 6. 27.시행)되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4조)
  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 
→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### 15)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-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(2021. 12. 7.개정, 2022. 12. 8.시행)되어 공공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「도서관법」 제27조에서 제29조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4조제1항, 안제35조제1항, 안 제47조)
  - 법 제32조 및 「도서관법」 제27조 → 법 제32조 및 「도서관법」 제29조
  - 법 제32조 → 법 제32조 및 「도서관법」 제29조
- 「청소년기본법」 개정(2014. 3. 24.개정, 2014. 3. 24.시행)되어 「청소년 기본법」

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(안제46조의2제1항)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→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

## 16) 「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20. 4. 7.개정, 2020. 4. 7.시행)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59조제6항이 제59조7항으로 이동되고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20. 7. 28.개정, 2020. 7. 30.시행)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22조의5제5항이 제22조의5제6항으로 이동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제1항, 안 제2조제5항, 안 제8조제1항)
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→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- 유아교육법시행령 →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

- 영 제59조제6항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4제5항

→ 영 제59조제7항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5제6항

## 17)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」

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21. 4. 6.개정, 2021. 4. 6.시행)되어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6조제2항제3호)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→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 18)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인용조문 기재오류 정비(안 제2조제1항)

- 제2항 → 제2조제2항

나.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(2개)

1) 「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(2018. 8. 14.개정, 2018. 12. 13.시행)되어 “건설기술자”가 “건설기술인”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2항제4호)

- 건설기술자 → 건설기술인

2)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및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(2024. 2. 16.개정, 2024. 3. 1.시행)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“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”을 삭제하고자 함(안 별표)

- 등급 라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-43(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) 삭제

다.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의 경우 위임근거 명확화(2개)

1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제2항에 따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위임근거 명확화(안 제1조)

- 목적 조항에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” 추가

2)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」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위임근거 명확화(안 제1조)

- 목적 조항에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” 추가

라.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(7개)

1) 「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」

- 정의한 것을 바로 약칭하지 않고, 용어 정의한 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

조항에서 약칭(안 제2조제2호, 안 제3조제1항)

2)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」

- 제9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제2조제1호에서 “법”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약칭한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(안 제9조제1항)

3) 「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유아교육법」을 제2조제1호에서 “법”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약칭한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(안 제4조제2항제3호)

4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약칭은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(안 제3조, 안 제7조제4항)

5) 「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」

-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,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)

6)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
-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,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)

7) 「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」

-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,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(안 제1조, 안 제3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1) 조례 개정 이유 검토

- 본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, 용어 및 표기법,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
### 2) 개정 주요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등 18개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
- 「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충청북도 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및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 등 2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표기법 등을 정비하는 것임

- ①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(2018. 8. 14.개정, 2018. 12. 13.시행)되어 “건설기술자”가 “건설기술인”으로 변경
- ②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(2024. 2. 16.개정, 2024. 3. 1. 시행)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“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”을 삭제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,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」 등 2개는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

-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제2항에 따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목적 조항에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”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목적 조항에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”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」 등 7개 조례는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에 따라 약칭 사용을 정비하는 것으로, 입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임
- 따라서, 본 28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일괄 반영과 자치법규의 입법 안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또한, 그 밖에 사전절차 및 입법안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, 「알기 쉬운 법령 기준」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,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